

[#붙임 1]

순천 지에이그린웰 하이드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 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24.11.08(금)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com) 또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일정

- 단 지 명 : 순천 지에이그린웰 하이드원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4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4층 ~ 지상20층, 8개동 일반분양 총 475세대
- 주택형 : 59㎡ : 62세대, 76㎡ : 38세대, 84A㎡ : 140세대, 84B㎡ : 141세대, 112㎡ : 94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 ▶ 배정세대

구분	59		76		84A		84B		합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2	10	1	5	4	20	4	20	11	55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1	5	1	5	1	5	4	20	
장기복무군인	1	5	0	0	3	15	3	15	7	35	
중소기업근로자	1	5	0	0	3	15	3	15	7	35	
장애인	전라남도	1	5	1	5	2	10	2	10	6	30
	광주광역시	0	0	0	0	1	5	1	5	2	10
합 계	6	30	3	15	14	70	14	70	37	185	

-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의 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배정세대 수의 5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4.11.08(금)	당사 홈페이지(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com) 및 일간신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주택전시관 개관	2024.11.08(금)	당사 주택전시관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125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시	2024.11.18(월)	인터넷 청약접수(09: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수 (www.applyhome.co.kr)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포함 **모** 은행)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에서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능하며, 각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서류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지참이 필수입니다. (필요서류 대표번호 별도 문의)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자 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뉘어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순천시 / 전라남도)	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청약신청 방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청약장소(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25번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당첨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청약통장 구비여부</th> <th>해당기관</th> </tr> <tr> <td>국가유공자</td> <td>청약통장 필요 없음</td> <td rowspan="2">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td> </tr> <tr> <td>장기복무제대군인</td> <td>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td> </tr> <tr> <td>장애인</td> <td>청약통장 필요 없음</td> <td>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 rowspan="2">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td> <td>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td> </tr> <tr> <td>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able>	구 분	청약통장 구비여부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구 분	청약통장 구비여부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I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 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 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등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청약 할 경우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한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등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등. 호 발생시에도 등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11.08(금)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주택전시관, 팜플렛 및 홈페이지(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com)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Ⅲ 위치도 / 주택전시관 약도 안내

- 주택전시관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25번지 (주택전시관은 정식 오픈일 이후 관람 가능)
- 대표번호 : 061-745-4750
- 홈페이지 : 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com
- 주택전시관 찾아오시는 길

